

# 'NLL 포기' 직접 발언은 없어…“바뀌어야 한다” 놓고 해석 논란일 듯

국정원 배포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 전문 아닌 발췌본…사실 파악 한계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배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대화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 다만, 'NLL이 바뀌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해석을 낼 수 있어 향후 여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공개된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전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진위를 둘러싼 여간 논란은 전문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방한계선 문제=이날 공개된 발췌본에서는 NLL 문제를 김정일 전 위원장이 먼저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남측이 주장하는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

까지 물려서고 그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원장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NLL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아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논란이 된 NLL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역 제안했다.

이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미군 재배치를 위해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드는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며 "우리 국민 사이에서 그 흐름을 둘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 대화록 열람·공개 법적 판단 달라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발언' 공개를 둘러싸고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기록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야 할지에 관해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공개 절차가 달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화록 열람·공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바로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물로 본다면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의 열람과 국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국

가안정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보호기간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일단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화록을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바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 의원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록물임은 분명하다"며 이런 논리를 반박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해 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차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 1953년 유엔사령관이 설정…정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 NLL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24일 공개하면서 그동안 잠자기 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쏟았다.

국방부는 NLL이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기 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쟁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설정 배경이 됐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남측 관할 하에 있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



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은 남북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NLL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 사례를 유발했고,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지방자치 20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 : 20%

반면, 중앙 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 분담 비율은 50%(서울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비 비율 70%(서울 40%) 확대를 통한 건전한 재정분담은 영유아보육정책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생각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